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정밀건강진단 실시 강화 등〉

■ 박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912호)

2024. 9.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 기 영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5
1. 정의 규정 정비	5
2. 소방업무환경측정 범위 확대	12
3. 정밀건강진단 실시 강화	14
4. 소방공무원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강화	17
5.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등	20
6. 소방공무원 특별휴가 근거 마련	3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정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6. 25.
3. 회 부 일 : 2024. 6. 2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16년 태풍 차바가 한반도에 피해를 입힐 당시 인명 구조활동을 벌이던 중에 눈앞에서 동료를 잃은 한 소방관이 수년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고통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사례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자살’에 대하여 위험직무순직을 인정한 첫 사례로 기록되면서 이를 계기로 법률에서 현장활동 중의 정신적인 피해도 신체적인 피해와 동일한 수준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현행법에서는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복지 및 건강에 관한 사항을 주로 규정하고 있으나 소방공무원이 행하는 위험직무의 특성상 심리적인 충격을 줄 수 있는 사건현장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것에 따라 발생하는 정신건강상의 문제와 이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

현재 많은 소방공무원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수면장애 등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소방공무원 자살률이 우리나라의 일반 국민 평균 자살률은 물론 OECD 평균 자살률을 상회하는 등 소방공무원들이 정신적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회복 및 자살 예방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또한, 1차로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추가로 2차 정밀검진 수검을 받을 필요성이 생긴 소방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여건에 따라 정밀검진 수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발생하고 있어서 소방공무원의 정밀검진 수검이 전국적으로 형평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이 요구됨.

이에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회복 및 자살 예방 등 심신건강의 안정과 치료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 및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은 물론 소방공무원이 받는 2차 정밀검진 수검의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정밀검진 실시에 최대한 노력할 책무를 소방관서의 장에게 부여하고, 또한 법의 적용범위를 기존의 화재·구조·구급활동이라는 전통적 활동으로부터 소방지원활동·생활안전활동 등에까지 확장된 개념으로 정의할 필요성이 있으며,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관리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유관기관과의 협력, 관련된 사실의 확인,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소방활동의 범위를 화재, 구조, 구급활동의 전통적 활동에서 소방지원활동, 생활안전활동 등까지 확장된 개념으로 정의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 나. 소방활동재해를 현장소방활동과 119종합상황실의 상황관리 업무 등 확장된 개념으로 정의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
- 다. 소방관서의 명칭변경 및 신설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안 제2조제4호)
- 라. 소방업무환경의 측정 범위를 119종합상황실까지 확대하고자 함(안 제15조제1항)
- 마. 소방관서의 장에게 소방공무원의 2차 정밀건강진단 실시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책무를 부여함(안 제16조제2항)
- 바. 소방공무원의 소방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안 제16조의2 신설)
- 사. 소방공무원의 건강정보의 관리·분석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보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함(안 제19조 신설)
- 아.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관리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행정기관 등과의 협력사항에 대해 규정하고자 함(안 제20조 신설)

자.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관리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된 국가기관이나 공사단체에 이와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1조 신설)

차. 현장소방활동 중 동료 소방공무원의 사고를 목격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경우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3조 신설)

Ⅲ. 검토의견

1. 정의 규정 정비

개정안은 ① 현행 “소방활동” 정의규정을 삭제하고, “현장소방활동” 정의규정을 신설하면서 소방활동을 현장소방활동의 하나로 포함되도록 하고, ② “소방활동재해”의 인정 범위를 현장소방활동과 상황관리업무 등으로 확대하며, ③ “소방관서”의 정의에 조직개편 현황을 반영하는 등 정의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활동”이란 「소방기본법」 제16조제1항의 소방활동을 말한다.	제2조(정의) ----- -----. 1. “현장소방활동”이란 「소방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생활안전활동, 그리고 제17조제1항·제4항에 따른 소방대원에게 필요한 교육·훈련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구조·구급활동을 말한다.
2. “소방활동재해”란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구조·구급	2. -----현장소방활동 및 상황관리 업무 등으로-

현행	개정안
등 소방활동 중 유해인자에 노출되거나 그 밖의 소방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 ----- ----- -----.
3. (생략)	3. (현행과 같음)
4. “소방관서”란 중앙·지방소방학교, <u>중앙119구조단</u> , 소방본부, 소방서를 말한다.	4. ----- ----- <u>중앙119구조본부, 국립소방연구원</u> -----.
5. ~ 7. (생략)	5. ~ 7. (현행과 같음)

<개정안에 따른 정의조항 정비>

구분	용어	내용
제1호	소방활동	“현장소방활동”으로 개념 확대
제2호	소방활동재해	“소방활동재해”의 범위 확대
제4호	소방관서	“119구조단”을 “중앙119구조본부, 국립소방연구원”으로 변경

현행법은 이 법에서 자주 사용하는 중요한 용어인 “소방활동”, “소방활동재해”, “소방관서” 등을 정의하고 있음¹⁾.

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활동”이란 「소방기본법」 제16조제1항의 소방활동을 말한다.
2. “소방활동재해”란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 중 유해인자에 노출되거나 그 밖의 소방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3. “소방공무원”이란 「소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4. “소방관서”란 중앙·지방 소방학교, 중앙119구조단, 소방본부, 소방서를 말한다.
5. “소방업무”란 「소방기본법」 제3조의 화재 예방·경계·진압 및 조사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등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안은 소방활동의 범위 확대, 조직 신설 등 소방환경의 변화에 맞게 현행 정의 규정을 수정하려는 취지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첫째, 현행법은 “소방활동”을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소방기본법」 제16조제1항²⁾)으로 정하고 있어, 그 범위가 화재 현장 및 구조·구급 현장에서의 활동에 국한되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소방활동의 범위를 (1) 「소방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 외에 (2) 화재예방·진압 등을 지원하기 위한 “소방지원활동”, (3) 일상생활 내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생활안전활동”, (4) “소방대원에게 필요한 교육·훈련”³⁾과 (5) 「119구

2) 「소방기본법」

제16조(소방활동)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이하 이 조에서 “소방활동”이라 한다)을 하게 하여야 한다.

3) 「소방기본법」

제16조의2(소방지원활동) ①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활동 외에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소방지원활동”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1. 산불에 대한 예방·진압 등 지원활동
2. 자연재해에 따른 급수·배수 및 제설 등 지원활동
3. 집회·공연 등 각종 행사 시 사고에 대비한 근접대기 등 지원활동
4. 화재, 재난·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활동
5. 삭제
6.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제16조의3(생활안전활동) ①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고가 접수된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 활동(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방대를 출동시켜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생활안전활동”이라 한다)을 하게 하여야 한다.

1. 붕괴, 낙하 등이 우려되는 고드름, 나무, 위험 구조물 등의 제거활동
2. 위해동물, 벌 등의 포획 및 퇴치 활동
3. 끼임, 고립 등에 따른 위험제거 및 구출 활동
4. 단전사고 시 비상전원 또는 조명의 공급

조·구급에 관한 법률(이하 “119법”이라 함)」에 따른 “구조·구급활동”⁴⁾으로 확대하여 “현장소방활동”으로 정의하려는 것임.

이는 전통적 소방활동인 화재·구조·구급활동으로부터 확장된 개념을 제시함으로써, 이 법이 적용되는 소방공무원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여 보건 및 안전에 관한 적용 범위를 확대하려는 취지로 보임.

<현행 소방활동 및 개정안에 따른 현장소방활동 비교>

소방활동 (현행)	현장소방활동 (개정안)
(1) 소방활동 (「소방기본법」§16①)	
-	(2) 소방지원활동 (「소방기본법」§16조의2①)
	(3) 생활안전활동 (「소방기본법」§16조의3①)
	(4) 소방대원에게 필요한 교육·훈련 (「소방기본법」§17①·④)
	(5) 구조·구급활동 (「119법」§13①)

5. 그 밖에 방치하면 급박해질 우려가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
제17조(소방교육·훈련)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업무를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대원에게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4)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3조(구조·구급활동) ① 소방청장등은 위급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구조·구급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인명구조, 응급처치 및 구급차등의 이송, 그 밖에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개정안은 “현장소방활동” 정의에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생활안전활동 등을 포함하면서 현행법의 “소방활동” 정의조항을 삭제하였는데, 현행법의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제10조),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제14조), 소방업무환경 측정 등(제15조), 역학조사(제17조) 등 소방공무원의 보건 및 안전과 관련한 개별 조문에는 “소방활동”에 적용하는 내용이 있어 체계가 맞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한편, 「119법」에 따른 구조·구급활동은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활동 중 “인명구조·구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명시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둘째, 개정안은 현행 “소방활동재해”를 “현장소방활동 및 상황관리 업무 등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으로 변경하여 정의하려는 것으로, 소방활동재해의 인정 범위를 현행법 보다 확대하려는 취지로 보임.

<현행 및 개정안에 따른 소방활동재해 비교>

현행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 중 유해인자에 노출되거나 그 밖의 소방업무 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
개정안	현장소방활동 및 상황관리 업무 등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

다만, 개정안은 “유해인자에 노출되거나 그 밖의 소방업무”를 삭제하고 “상황관리 업무”를 새로이 규정하고 있는데, 화재진압, 구조·구급활동을 주로 하는 소방공무원의 직무 특성상 직무수행과정에서 유해물질, 감염병 질환 등 유해인자에 지속적·반복적으로 노출된다는 점에서 소방활동재해를 정의하는 때에 “유해인자에 노출”은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항으로 필요한 표현인 것으로 보이고,

현행의 “소방업무”는 이 법에서 그 범위를 정의⁵⁾하고 있어 의미하는 바에 무엇인지 알 수 있지만 개정안의 “상황관리 업무”는 의미하는 바에 무엇인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개정 시 그 반영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셋째, 현행법은 “소방관서”를 “중앙·지방 소방학교, 중앙119구조단,

5)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소방업무”란 「소방기본법」 제3조의 화재 예방·경계·진압 및 조사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등의 업무를 말한다.

소방본부, 소방서”로 정의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직제개편⁶⁾에 따라 “중앙119구조단”을 “중앙119구조본부”로 변경하고 “국립소방연구원”을 새로이 포함 시키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 조치인 것으로 보임.

<현행 및 개정안에 따른 소방관서 비교>

현행	중앙·지방 소방학교, <u>중앙119구조단</u> , 소방본부, 소방서
개정안	중앙·지방 소방학교, <u>중앙119구조본부</u> , <u>국립소방연구원</u> , 소방본부, 소방서

6)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에 따라 중앙119구조단은 중앙119구조본부로 명칭이 변경되었고(‘13. 9. 17.), 국립소방연구원은 2019년에 신설되었음(‘19. 5.14).

2. 소방업무환경측정 범위 확대

개정안은 현행 “현장 소방공무원 또는 소방활동 현장”에 국한되어 있는 소방업무환경의 측정 범위를 “119종합상황실”까지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5조).

현행	개정안
제15조(소방업무환경측정 등)	제15조(소방업무환경측정 등)
① 소방청장은 재난현장의 유해인자로부터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현장 소방공무원 또는 소방활동 <u>현장에</u> 대한 환경을 측정하고 분석·평가(이하 “소방업무환경측정”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면 전문가로 하여금 소방활동 현장에 대하여 유해인자 발생 등 소방업무환경을 측정하게 할 수 있다.	① ----- ----- ----- ----- - <u>현장과 119종합상황실에</u> --- ----- -----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소방청장이 소방업무환경을 측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재난현장의 유해인자로부터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현장 소방공무원 또는 소방활동 현장에 대한 환경을 측정하고 분석·평가하는 것으로, 현장부서에서 복무하는 소방공무원을 소방활동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취지임.

개정안은 「소방기본법」 제4조⁷⁾에 따른 119종합상황실도 소방업무환경측정 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으로, 이는 119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들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그 범위를 확대하려는 취지로 타당한 측면이 있어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 소방청은, 119종합상황실은 소방공무원이 24시간 상시근무하는 공간이므로, “재난현장”의 유해인자 이외에 통상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인자도 소방업무환경측정의 대상이 되어야 하므로, “재난현장의”를 “직무 관련”으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입장임.

7) 「소방기본법」

제4조(119종합상황실의 설치와 운영)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에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 신속한 소방활동(소방업무를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위한 정보의 수집·분석과 판단·전파, 상황관리, 현장 지휘 및 조정·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19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정밀건강진단 실시 강화

개정안은 현행 소방관서의 장이 특수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정밀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정밀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6조).

현행	개정안
제16조(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① (생략)	제16조(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① (현행과 같음)
② 소방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결과 특정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u>필요한 경우 해당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정밀건강진단 실시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u>	② ----- ----- ----- ----- <u>유소견자 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정밀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u> ----- ----- <u>정밀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u>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⁸⁾로 하여금 소방공무원의 건강 보호·유지를 위하여 건강진단기관⁸⁾ 등에서 소방공무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특수건강진단의 후속조치로 이루어

8)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소방전문 의료기관·소방전문치료센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기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의미함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제16조제1항)

지는 정밀건강진단은 소방관서의 장의 재량사항으로 정하고 있음.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도에 실시한 특수건강진단 결과 전체 인원 중 약 72.8%에 해당하는 소방공무원이 건강이상 소견을 보였고, 이 중 약 4.5%만이 후속조치로서 정밀건강진단을 받았음⁹⁾.

〈2022년 특수건강진단 결과〉

(단위 : 명, %)

특수 건강진단 실시인원 (A)	건강이상자				정밀건강진단	
	인원 (B)	일반질병	직업병	건강이상자 비율 (B/A)	실시인원 (C)	실시율 (C/B)
62,453	45,453	39,211	6,242	72.8	2,063	4.5

※ 자료: 소방청

또한, 2018년 감사원의 지적¹⁰⁾ 이후 시·도 소방본부는 정밀건강진단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시·도 소방본부별 정밀건강진단 예산편성 및 정밀건강진단 실시 현황은 지역별 여건에 따라 편차가 있음(참고자료 2 참조).

이에 개정안은 소방관서의 장에게 특수건강진단 결과 유소견자 또는

9) 이와 관련해서 소방청은 건강이상자가 모두 정밀건강진단 대상자는 아니라고 설명함. 즉, 건강이상자는 유소견자와 요관찰자를 모두 포함하는데, 유소견자라 하더라도 이미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거나 내원 중인 병원에서 개인별 정밀진단을 받은 경우 등에는 중복해서 정밀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설명함.

10) 2018년 11월 감사원은 특수건강진단 결과 건강이상 소방공무원이 적절한 후속조치를 받지 못한 채 업무를 지속하여 건강 악화 우려가 있으므로, 건강이상자로 진단받은 소방공무원에 대해 정밀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등 적절한 건강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이에 대해 소방청은 감사원의 지적 이후 정밀건강진단 관련 예산이 시·도 소방본부에서 편성되기 시작하였다는 설명임

의사의 소견에 따라 정밀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정밀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여 “소방공무원의 2차 정밀건강진단 실시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책무를 부여”하려는 것¹¹⁾으로, 소방공무원에 대한 체계적 건강관리를 보다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 소방청은, 소방공무원은 업무 특성상 유해인자 등 위험에 장기·반복적 노출이 불가피하고, 그로 인한 질병의 발생·악화의 위험성이 높아 사후조치로서 정밀건강진단을 의무화하여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11) 출처: 개정안 주요내용 마.

4. 소방공무원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강화

개정안은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소방공무원의 소방활동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u>제16조의2(소방공무원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 ①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소방활동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발생의 예방을 위하여 소방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 및 관리하여야 한다.</u> <u>②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 또는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 지체없이 소방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u> <u>③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의 대상·시기·항목 등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u>

현행법은 업무 특성상 각종 유해인자 노출 위험성이 큰 소방공무원의 건강 보호·유지를 위하여 의무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면서, 감염성 질환에 대한 예방접종의 실시는 소방청훈령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에서 정하고 있음¹²⁾.

개정안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감염병 예방접종 의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사전적·체계적으로 소방공무원에 대한 감염병 예방·관리를 도모하려는 취지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일선에서 지키는 소방공무원의 안전 제고를 통한 처우 개선 및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방접종의 시기 및 항목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이므로 입법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유사입법례로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은 군에서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예방접종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방접종을

12)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소방청훈령)

제18조(건강진단의 방법 등) ① 특수건강진단은 채용 후 배치 전 건강진단, 정기건강진단, 수시 건강진단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정밀건강진단은 특수건강진단결과 유소견자를 대상으로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시한다.

③ 건강진단 방법과 횟수는 별표 2에 따라 실시한다.

④ 건강진단결과의 판정 등은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고용노동부 고시)」 별표4 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용하여 판정한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규정」 [별표2] (일부 발췌)

1) 채용 후 배치 전 건강진단

구분	검 사 항 목
감염성 질환	HBs Ag, HBs Ab, anti-HAV IgG, 수두, 홍역, 잠복결핵

2) 정기건강진단

구분	검 사 항 목
감염성 질환	C형간염(anti-HCV), 매독(VDRL 또는 RPR)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¹³⁾.

다만, 외부와 단절된 채 집단생활을 하는 군인과 소방공무원은 환경상 일정한 차이가 있으며,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에서도 경찰공무원의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입법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에 대하여 소방청은, 소방공무원은 유해인자 노출 등에 따른 각종 감염성 질환 발생 우려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소방활동 중 대민 업무 수행이 빈번하여 이를 예방·관리하기 위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13)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① 국가는 군에서의 감염병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군에서의 감염병의 발생 여부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제6조에 따른 군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예방접종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예방접종 이력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2항 각 호의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유하여야 하며, 공유의 절차,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등

(1) 주요 내용

개정안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관리시스템(이하 “보건관리시스템”이라 함)의 구축·운영 및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및 복지증진을 위해 유관기관에 협력, 사실의 확인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19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등) ①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의 소방활동 현황 및 건강정보의 관리·분석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기록·관리하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관리 시스템(이하 “보건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현행	개정안
<신설>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 보건관리시스템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에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를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보건관리시스템의 운영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대책, 사용권한 관리, 목적을 달성한 정보의 파기, 개인정보 취급 승인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유관기관과의 협력) ①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및 복지증진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시장·군수·구청장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u> <u>② 관계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u> <u>제21조(사실의 확인)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관리에 필요하다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국가기관이나 공사(公私)단체 등에 이와 관련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u>
<u><신 설></u>	<u>제2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담당 소방공무원은 보건안전관리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u>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① 소방공무원 보건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② 소방청장이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사실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③ 보건안전관리 담당 소방공무원이 직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 제19조부터 22조까지의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제19조	<u>소방공무원 보건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u> 규정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 처리권, 관계기관 자료요청권 등)
제20조	소방청장은 <u>유관기관에</u>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u>협력을 요청</u>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함
제21조	소방관서장은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관리에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등에 관련된 <u>사실조회</u> 가능
제22조	보건안전관리 담당 소방공무원은 직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u>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u> 가능

(2) 검토의견

①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 (안 제19조)

현재 소방청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소방청훈령)¹⁴⁾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회복 등 심신 건강의 안정과 치료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소방공무원 보건관리시스템인 ‘소방보건e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임.

<보건관리시스템(소방보건e시스템) 개요>

□ 개 요

- (사업목적) 소방공무원 맞춤형 보건서비스 제공과 소방 활동 현장 안전 정보 수집·분석을 체계적으로 실행, 업무의 효율성 극대화
- (대 상) 전국 소방공무원(소방관서에서 소방활동업무 종사자 포함)
- (접속주소)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관리 시스템(<http://hsms.go.kr>)
- (개 시 일) 2020. 1. 1. ※ 연간 상시 운영
- (법적근거)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제25조~제30조

□ 주요기능

- (출동정보) 재난현장 출동 및 활동정보 관리에 필요한 온라인 기능
- (유해인자) 재난현장 유해인자의 개인별 노출이력 전산 관리·조회 기능
- (신체건강) 특수건강진단 예약, 결과관리 및 조회, 건강진단 위험군 관리 등 소방공무원 신체 건강관리 기능
- (마음건강) 마음건강 상담·진료절차, 협력치료기관 정보 제공, 온라인 설문 및 분석, 상담·치료예약 및 비용청구 기능
- (안전관리) 현장 소방활동 안전사고 관리·분석·사고사례 전파(공유), 공·사상자 관리에 필요한 온라인 업무처리 기능
- (보건관리) 소방공무원 보건안전에 관한 기초현황, 지역별 협력기관 관리, 주요사항 통계·분석·조회 등 보건안전 관리자 기능

※ 자료 : 소방청

개정안은 보건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외에 개인정보의 수집을 금지하는 「개인정보 보호

14)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제25조(소방보건e 시스템 운영) ①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의 재난현장 출동정보, 유해인자 노출이력 및 특수건강진단 결과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소방보건e 시스템을 운영한다.

법」의 취지¹⁵⁾를 고려할 때 개인정보의 처리가 포함된 보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임.

다만, 안 제19조제2항은 “소방공무원의 심신 건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포괄적인 측면이 있음.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¹⁶⁾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

15)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7.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16)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함(「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5호)

인정보만을 수집하여야 하며 건강정보와 같은 민감정보는 원칙적으로 처리가 금지되나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하다는 점¹⁷⁾을 고려하면, “소방공무원의 심신 건강에 관한 업무”를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어 보임.

또한, 안 제19조제2항과 안 제22조는 모두 개인정보처리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문 정리가 필요해 보임.

개정안에 대해 소방청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보건안전 관리 및 공상 입증지원 등을 위해 보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법률에서 정할 필요가 있으나, 동법 시행령¹⁸⁾에서 소방공무원의 건강 정보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법률에 이러한 사항을 규정할 실익이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임.

17)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18)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1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소방청장, 시·도지사 및 소방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소방활동재해로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소방공무원의 치료 지원에 관한 사무
2. 법 제16조에 따른 소방공무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또는 정밀건강진단에 관한 사무
3. 법 제17조에 따른 직업성질환역학조사에 관한 사무
4. 법 제18조에 따른 질병소견자에 대한 소방업무 수행의 제한에 관한 사무

[본조 신설 2024. 8. 6., 시행일 2024.8.14.]

개정안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안 제19조제3항은 “보건관리 시스템의 운용”을 위해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한정하지 않으면 자의적 판단에 따라 요청 범위가 확대될 수 있으므로 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또한, 안 제19조제5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일반법으로서 이 법의 모든 조항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안 제1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만 한정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될 수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②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소방관서장의 사실 조회(안 제20조 및 제21조)

개정안은 소방청장이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안 제20조), 소방관서장이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관리와 관련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1조).

현재 소방사무는 시·도의 자치사무이므로¹⁹⁾ 시·도 소방본부 소속

19) 「지방자치법」

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관리 및 복지증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의 협조가 필요하고, 동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사혁신처·질병관리청·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 및 사실조사가 필요하므로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개정안 제20조는 유관기관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를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및 복지증진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라고 정하고 있는데, 그 범위가 포괄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유사입법례로서 「악취방지법」은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악취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의 사업활동 및 악취방지기술 등” 악취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의견의 제출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²⁰⁾.

또한, 개정안 제21조는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소방

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나.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20) 「악취방지법」

제20조(관계 기관의 협조)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악취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의 사업활동 및 악취방지기술 등 악취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의견의 제출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공무원의 보건안전관리에 필요하다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국가기관이나 공사(公私)단체 등에 “이와 관련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사실조회 목적과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포괄적인 측면이 있음.

참고로, 유사 입법례로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경찰관서의 장이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국가기관 등에 “직무 수행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²¹⁾.

개정안에 대해 소방청은,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관리 및 복지증진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은 필요하나, 입법 취지 달성과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유관기관의 협력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또한,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관리 및 복지증진을 위해 관련된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연금공단 등이 보유한 소방공무원의 정보 사실의 확인이 필요하나, 입법 취지 달성과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국가기관이나 공사(公私)단체 범위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21)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사실의 확인 등) ① 경찰관서의 장은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국가기관이나 공사(公私) 단체 등에 직무 수행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소속 경찰관으로 하여금 현장에 나가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협조를 받아 그 사실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③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안 제22조)

개정안은 보건안전 담당 소방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민감정보로서 건강에 관한 정보(제23조) 및 고유식별정보(제24조)²²⁾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 개인정보의 수집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제15조제1항제2호)²³⁾을 고려하면 그 취지는 타당해 보임.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이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안 제22조의 “보건안전관리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보다 구체화하여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어 보임.

개정안에 대해 소방청은, 소방공무원의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에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가 마련되어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 중이므로(영 제12조)²⁴⁾, 중복되는 사항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서 정할 실익이 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는 의견임.

22)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법조문은 [참고자료 3] 참조

23)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법조문은 [참고자료 3] 참조

24)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법조문은 각주 17) 참조

개정안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와 관련된 업무의 특성을 고려할 때 개인정보처리자를 “보건안전관리 담당 소방공무원”이 아니라 안 제19조제2항과 같이 “소방청장”으로 일관되게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수반하는 업무를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6. 소방공무원 특별휴가 근거 마련

개정안은 소방공무원이 현장소방활동 중 동료 소방공무원의 사고를 목격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23조(특별휴가) ① 소방공무원이 현장소방활동 중 동료 소방공무원의 사고를 목격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관련된 특별휴가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은 공무원의 휴가를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하고 있으며, 경조사, 출산, 포상 등에 대하여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²⁵⁾.

개정안은 현장소방활동 중 동료 소방공무원의 사고를 목격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25)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 및 제20조 참조

록 하려는 것으로, 소방공무원이 안정과 휴식을 취하고 누적된 정신적 피로를 해소하여 심신의 건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일정한 휴식 시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특히, 소방공무원은 화재진압 현장 및 구조·구급 과정에서 참혹한 상황을 수시로 접하게 되는 직무 특성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같은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의 위험에 대한 노출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참고자료1 참조).

다만, 개정안의 검토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공무원의 휴가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하고 있고, 소방공무원의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소방공무원의 복무 등의 특례에 관한 사항은 「소방공무원법」 및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²⁶⁾, 이 법에 특별휴가제도를 규정하는 것이 법률 체계상

26) 「소방공무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소방공무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임용, 교육훈련, 복무,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4조(복무규정) 소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법이나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공무원법」 제24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1조(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특별휴가에 관한 특례)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특별휴가에 관하여는 이 영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휴가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타당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특히, 「국가공무원 복무규정」²⁷⁾은 소방공무원을 포함한 재난·재해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심리적 안정 지원을 위해 심리안정휴가(특별휴가)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의 내용이 심리안정휴가와 중복되는 부분이 없는지 검토가 필요함.

둘째, 경찰공무원 및 해양경찰공무원 등 유사한 위험 직군에는 이러한 특별휴가가 부여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방공무원에게 이러한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형평성 차원에서 적절한지도 검토가 필요함.

참고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²⁸⁾.

개정안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개정안의 내용이 현행 심리안정휴가와 중복되는 부분이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27)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 ⑰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4일의 범위에서 심리상담, 진료 및 휴식을 위한 심리안정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건·사고 등 심리안정휴가의 세부 인정 기준, 심리안정휴가의 부여 방법 및 사용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신설 2023.7.18.>

1.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사고를 경험했을 것
2. 제1호에 따른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사고의 경험으로 인해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28)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3조(특별휴가) 피해교원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피해교원”이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을 의미함 (동법 제20조제1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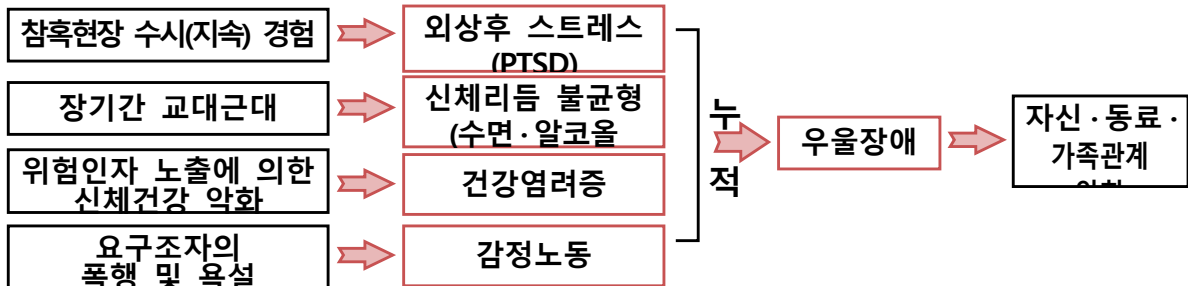
문 의 처
02)6788-5351

참고 1

소방공무원 스트레스 현황)

(자료 : 소방청)

□ 소방공무원 주요 스트레스



□ 정신건강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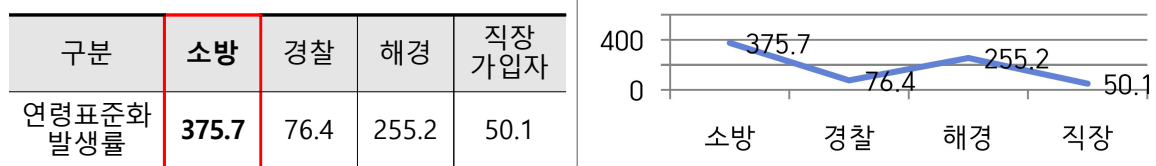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실시 인원	PTSD		우울증		수면장애		음주습관장애	
		위험군	비율	위험군	비율	위험군	비율	위험군	비율
'20년	52,119	2,666	5.1	2,028	3.9	12,127	23.3	15,618	30.0
'21년	53,980	3,093	5.7	2,379	4.4	12,310	22.8	12,271	22.7
'22년	54,056	4,364	8.1	4,129	7.6	16,108	29.8	14,149	26.2

※ 일반인의 PTSD 유병률 0.6%(이지은, 이화여대 뇌융합과학연구원, 2014)

□ 높은 스트레스 발생률

(단위 : 비율)



※ 경찰, 소방, 해경 정신건강사업 통합·운영방안 연구(김인아·김석현, 한양대, 2017)

□ 공상 및 자살

(단위 : 명)

구분	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공상	5,784	285	291	325	380	474	607	788	697	1,004	933
자살	105	6	7	7	12	6	15	9	14	12	17

□ 극단적 선택



※ 인구 10만명 당 자살현황 비교

구분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전체 국민*
'21년	26.3명	18.6명	26명
'22년	31.5명	16명	25.2명

* 전체 국민의 경우 높은 자살률(70대, 80대)을 포함

□ 2022년 공무원연금 수급자 직종별 평균 사망연령

(단위 : 세)

한국인	소방	경찰	정무직	일반직	공안직	교육직	법관·검사	별정직	기능직
83.5	73	77	85	77	76	80	80	84	78

참고 2

소방공무원 정밀건강진단 예산편성 현황(전국)

(단위 : 명 / 천원)

구분	예산편성* (2023년 기준)	2020년		2021년		2022년	
		실시 인원	집행 총액	실시 인원	집행 총액	실시 인원	집행 총액
서울	통합	-	0	-	0	-	0
부산	별도	33	4,950	92	13,800	111	16,650
대구	별도	449	3,366	136	8,381	117	6,568
인천	별도	78	3,326	32	1,581	42	1,310
광주	별도	66	2,640	218	39,253	189	31,159
대전	통합	147	7,144	170	9,388	86	6,700
울산	별도	23	806	28	1,456	31	1,756
세종	별도	-	0	87	2,544	38	3,454
경기	통합	-	0	129	10,045	211	9,387
강원	통합	57	4,611	139	4,998	189	8,120
충북	별도	515	30,182	340	22,138	273	16,293
충남	통합	63	5,189	170	7,869	271	9,478
전북	별도	10	1,863.8	228	17,496	101	10,459
전남	별도	94	2,436	101	4,216	107	5,350
경북	별도	99	7,924	56	6,585	35	7,756
경남	통합	468	70,200	44	5,502	41	5,190
제주	통합	69	2,264	118	3,283	221	6,119
창원	통합	15	483	19	1,076	-	0

* 시·도 소방본부별 예산편성 방법은 지역 여건에 따라 특수건강진단 운영 예산과 정밀건강진단 운영 예산을 별도 또는 통합 편성 중임²⁹⁾

29) 참고로, 소방청에 의하면 서울의 경우 특수·정밀건강진단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타 예산 내에 편성하여 집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참고 3

건강에 관한 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관련 규정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원칙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3.14.>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한한다.
7.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② 건강에 관한 정보(민감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①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개되는 정보에 정보주체의 민감정보가 포함됨으로써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 전에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게 알려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민감정보의 범위)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법 제18조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의 해당 정보는 제외한다.

1. 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3.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
4. 인종이나 민족에 관한 정보

③ 고유식별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② 삭제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보호위원회는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규모,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⑤ 보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4항에 따른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법 제18조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의 해당 정보는 제외한다.

1.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2. 「여권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권번호
3.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4.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